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40596	홈페이지 http://잠뱅G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 04. 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 04. 23.	담당자 이메일 kimtim66 @naver.com

[잠뱅GO]
정 보 공 개 서

잠뱅GO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잠뱅고(GO) 대표 양운서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잠뱅GO 가맹사업본부 소재지 및 연락처]

주 소	인천시 남동구 경원대로 971, 1층Y14호(간석동, 홈플러스)		
가맹사업부 전화	070-4190-0076	팩스번호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1>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재무상황

<별첨 2>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첨 3> 주요품목의 거래형태

<별첨 4> 주요품목의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 5> 가맹점사업자 현황표

<별첨 6> 가맹점 현장 점검표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짬뽕GO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짬뽕고(GO)	짬뽕GO	인천시 남동구 경원대로 971, 1층Y14호(간석동, 흥플러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2.01.20.	양윤서	070-4190-0076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342-47-0068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짬뽕GO	
상 호	짬뽕GO 00점	당사는 보통 해당지역을 사용하여 가맹점상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54,822		
2023년				79,704		
2024년				101,204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양윤서	대표	2022.01.20. ~ 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사업연도 말 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전 3년동안 [짬뽕GO]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여부(일자)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 일
	상표 (제43류)	출원(2023.10.31.)	출원번호 40-2023-0196450	김서영	

- ※ 당사의 상표는 출원 심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준비중)

직영점 시작일 : 2022년 01월 20일

2. [짬뽕GO]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짬뽕고(GO)	짬뽕GO	양윤서	가맹사업 준비중	인천시 남동구 경원대로 971, 1층Y14호(간석동, 흙플러스)

3. [짬뽕GO]업종

영업표지	업종	
짬뽕GO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식	짜장, 짬뽕 등 중식 전문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짬뽕GO]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	0	1	1	0	1	1	0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	1	1	-	1	1	-	1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짬뽕GO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짬뽕GO] 가맹점 수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짬뽕GO]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또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짬뽕GO]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지역	2024년 가맹점 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 매출액(상한)		연평균 매출액(하한)		
		연매출액	3.3㎡ 당	상한	3.3㎡ 당	하한	3.3㎡ 당	
전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짬뽕GO

경남	-							
제주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짬뽕GO] 브랜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당진종합금융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26-12	1588-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지점 창구를 이용하시거나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s://www.kbstar.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짬뽕GO]** 또는 **[당사 사업자등록번호 342-47-00684]**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고 이체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나 예치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짬뽕GO]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미지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기 위한 대가	3,300	계약체결 후 다음날	가맹사업시작 후 소멸	1.영업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 2. 영업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의 대가	2,200	계약체결 후 다음날	일할로 계산하여 소멸		
교육비(기술이전비)		5,500	계약체결 후 다음날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행사비		-	-	-	-	-

짬뽕GO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0]			
(현금)계약이행보증금	0	계약체결 후 다음날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을 공제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이자가 없음
담보목적물	해당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1,000]
가맹비	5,500
교육비	5,500
보증금	-
개점행사비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짬뽕GO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1,380]				66㎡(20평 기준)
인테리어	당사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35,200	1,760	공사착공시 , 집기셋팅 전 2회로 분할하여 지급 (지급금액 은 가맹계약서 에 의함)	시공전 계약취소	목공사, 전기공사, 도 장공사, 타일공사, 조 명공사 등
간판/실사/ 어닝	당사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3,300			시공전 계약취소	전면간판, 돌출간판, 실내외 썬팅 등
주방기기	당사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16,500			설치전 계약취소	냉동, 냉장고, 간택 기, 작업대, 싱크대 등
홍보/판촉	당사	550			공급전 계약취소	셋팅지 2,000매/ 유니 폼/ 앞치마/ 조리모 등
주방기물	당사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5,500			설치전 계약취소	주방그릇, 집기 일체
의/탁자	당사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330			설치전 계약취소	SET 당 비용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철거, 가스설비, 냉난방비, 전기승압, 전면샷시, 화장실, 소방공사, POS, TV모니터 메뉴판, 무인주문기(키오스크) 기타 전자제품 등은 모두 별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통행인의 수, 교통량, 시장특성, 통행인의 구매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 을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

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8)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해당없음					
광고/판촉비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정기	가맹본부	110	교육 실시 1일 전	교육실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교육필요시 실비범위내에서 재산정함.
	특별	가맹본부	220			
특별 경영지도비	가맹본부	220	경영지도 실시 3일 이전	실시 전	지도 실시 후	요청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협의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시공전 취소	시공 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협의	교체·보수 후 2일 이전	공사 2일 이전 취소	공사 시작 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당사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체·보수 후 2일 이전	공사 시작 전 취소	공사 시작 후	
자연이자	가맹본부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15일까지는 연 12%, 16일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15%	완제일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2년 단위로 계약은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되며, 이를 위해서 당사에 추가로 2년 단위로 일금이백이십만원(W2,200,000) (부가세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갱신료	“갑”	2,200,000원(VAT포함)	갱신후 1개월 내	반환안됨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되 양수 사업자와 신규로 가맹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출원신청 후 등록된 경우에 한함)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을”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짬뽕GO]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는 2개월 전에 당사에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에 동의를 받은 양수인은 교육비 일금오백오십만원(₩5,500,000원)(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완납하고 교육훈련과 기술을 습득한 뒤, 개점을 위한 행정적 인허가 및 관련 준비를 마친 후에 당사는 양수인의 양수를 최종 승인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귀하는 지체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철거, 원상복구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①. 귀하는 당사가 대여한 비품, 집기 등을 당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인테리어 디자인, 레시피, 각종 이미지컷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가맹계약서, 부대계약서, 각종규정, 매뉴얼, 레시피, 연락문서, 소정용지, 팸플릿 등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련서류를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는 가맹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의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귀하가 위에 규정된 철거, 반환, 원상회복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조치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1일당 일금삼십만원정(₩3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귀하는 계약 종료 이후 같은 장소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된 제3자의 명의로 1년 이내에 동종업종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당사는 귀하에게 가맹계약서 제31조 제2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세부사항

귀하가 [짬뽕GO]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5. 참조	왼쪽에 기재된 제품 외에 다른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1차 위반 : 구두경고 2차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3차 위반 : 물류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지역특성 및 상권에 따라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원,부재료 등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차 위반 : 구두경고 2차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3차 위반 : 물류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가격 결정에 대해 지역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2023.12.기준)
별첨5 참조	별첨5 참조	공문발송 및 전화통지	지역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중식(짜장, 짬뽕)	짬뽕GO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원칙: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사방 500m 예외: 아래의 경우와 같이 상업지역의 경우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영업지역 결정 1. 왕복 6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4. 특수상권: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대학교, 역사,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등 5.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번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밀집상권, 유흥가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주요관공서인근상권, 대형병원상권 등) 6. 부산 도심의 복합상권으로 서면 상권, 남포동 상권, 부산대 상권, 경성대 상권, 부경대 상권, 동아대 상권, 동래 상권, 광안리 해수욕장 상권, 해운대 해수욕장 상권 등	별지에 영업 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재계약)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의함, 합의를 거친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한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분할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되어(가맹사업법 제12조 ① 제3호 및 시행령 별표 3. 다목.)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요청할 경우 당사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는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3.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짬뽕GO』 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귀하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짬뽕GO]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앱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5조 제1항 상의 가맹점 주소지 및 영업지역을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5조 제6항에 따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100	-	-

당사는 온라인 판매 매출이 없습니다.

(당사는 가맹점 모집중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당사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전용상품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재계약/갱신 기간

[잠뱅GO]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재계약/갱신시 계약기간은 [재계약 또는 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1호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2호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 2항 3호가목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3호나목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3호다목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조 2항 3호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2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약정 해지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2회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한 경우 (아래 참조)	25조 1항
즉시 해지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한 즉시해지 사유 발생시 (아래 참조)	25조 2항

짬뽕GO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당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에게 가맹계약서 제20조 상품공급의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25조 1항 1호
2.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등을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25조 1항 2호
3. 귀하가 상품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5조 1항 3호
4.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조 1항 4호
5. 귀하가 당사가 공급하거나 당사가 지정한 자와 물품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25조 1항 5호
6. 귀하가 내부사인물, 간판 등 외부영여표지 기타 당사가 고유하게 보유 또는 출원한 시설을 당사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25조 1항 6호
7. 귀하가 모든 광고에 사용되는 매장상호를 계약서상의 행정구역명이 포함된 상호로 사용하지 않고 “귀하의 임의대로 다른 행정구역상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25조 1항 7호
8. 귀하가 배달을 할 경우 당사와 협의한 지정된 행정구역상 배달구역을 벗어나 다른지역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	25조 1항 8호
9. 귀하가 배달을 할 경우 당사에서 정한 배달앱 구성대로 하지 않고 귀하의 임의대로 내용을 변경해서 배달하는 경우. 단 특수한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에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5조 1항 9호

※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1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5조 2항 1호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 등으로 지불정지가 된 경우	25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5조 2항 3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5조 2항 4호

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5조 2항 5호
○ 귀하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5조 2항 6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5조 2항 7호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5조 2항 8호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가맹점 영업을 중단한 경우	25조 2항 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2.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부동산 및 권리문제에 문제가 없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비 부담

※ 양도의 승인은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승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단,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양수인은 교육비 일금오백오십만원(₩5,500,000원)<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완납하고 교육훈련과 기술을 습득한 뒤, 개점을 위한 행정적인 허가 및 관련 준비를 마친 후에 당사는 귀하의 양수인의 양수를 최종 승인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이 폐업된 이후, 이를 양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으로 가맹비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짬뽕GO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 통보하고 본사는 상속인에게 가맹점교육을 실시	교육비 부담
성년후견개시 (성년, 한정, 특정, 임의후견포함)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피성년후견인은 후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견 개시사실을 가맹본부에 통보하고 본사는 성년후견인에게 교육을 실시	교육비 부담
그외 대리행사 및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짬뽕GO]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중식 전문점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짬뽕GO]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10:00~오후09:00	주 6일 이상, 월 26일 이상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 불가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연속하여 7일이상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영업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짬뽕GO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메뉴 조리방법 및 상태(2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메뉴조리방법 및 상태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외관청결상태 (외부매장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외관청결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내부청결상태 (내부매장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내부청결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주방상태 (주방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주방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서비스상태 (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서비스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화장실청결상태 (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화장실청결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짬뽕GO』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판촉 계획 공고 → 각 가맹점별 부담액 제시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 당사에 지급 → 가맹점사업자에게 내역서 교부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광고)/ 70% 이상(판촉)이 시행 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하는 광고 및 판촉의 경우에는, 귀하는 반드시 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당사가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귀하는 『짬뽕GO』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관할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하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짬뽕GO

- ① 당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1.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②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①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②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③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가맹계약 기간 내 또는 가맹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 제10조 영업비밀준수의무, 검열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당사에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손해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가맹계약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당사에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가맹계약서상 기타 제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5조 제1항 5호, 6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9-14]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7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사업의지 파악 - 전반적인 창업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점포입지 및 경쟁업체 조사 - 지역상권 및 사업타당성 검토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 희망지역 점포 결정 및 임대점포 인허가 유무확인 점검 - 가맹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인테리어 사항(추가공사등)확정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받은날로부터 14일이 지난후	
점포실측	- 공사 및 시공비용 산출 - 본사 매뉴얼에 따른 공사도면 작성	D-27	
실내외공사 및 주방기계 및 기구설치	- 본사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내.외부 공사 및 인허가 - 주방기구 및 기계 설치	D-24~5	
교육실시	- 인허가 사항 점검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허가, 사업자 등록증) - 식품위생교육 수강	(공사후교육) D-7~4	- 창업주 조리실습 및 경영교육은 가오픈 전 날부터 4일간 진행
개점준비마무리	-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최종점검 - 주방기구 최종점검 및 주방비품반입 - 가개점 1일전 식자재 반입	D-2~1	
개점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일 - 지속적 관리지도 및 이벤트 행사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귀하와 당사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 쳐가맹본부 부담 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 오픈시 제공되는 오픈지원인력, 홍보물, 판촉물 등은 모두 유상으로 특별히 무상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판촉 및 개별판촉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판촉 행사시 귀하와 개별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품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짬뽕GO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 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이를 설명.	통상적인 가맹점 경영지도 외 가맹점사업자가 특별 경영지도 요청시 경영지도담당자 (1일 1인 기준 일금이십이만원 (₩220,000) <VAT포함>)	문의: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짬뽕GO]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시 교육	메뉴 제조방법 및 개점 전에 필요한 교육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개업 전일까지	필수교육
보수 교육	개업시 교육 숙련도가 낮을 경우	현장실습	추후공지	점주매장
특별 교육	신메뉴 출시 등	현장실습	추후공지	점주매장

※ 당사의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차	주요내용	교육장소	비고
1일차	주방기기 설비 및 셋팅, 체인점 오픈준비 상황 점검	점주매장	오픈준비 및 셋팅
2일차	- 기본제조방법 이론교육 및 실습 - 제조레시피 이론교육 및 실습 - 체인점 경영 노하우 교육 - 종업원 친절교육 노하우 및 금기사항 교육 - 기본接客 요령 교육	점주매장	현장교육(가오픈)
3일차	기본제조방법 실습, 제조레시피에 따른 실전 제조 숙련도 점검, 체인점 경영 노하우 교육, 기본接客 요령 교육, 오픈 지원 활동	점주매장	Grand Open
4일차	오픈지원 및 운영능력 최종 점검, 체인점 홍보 계획 점검, 종업원 교육 점검,接客요령 점검 및 교육	점주매장	오픈 2일차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짬뽕GO]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업시 교육	5일	5,500(VAT포함)	
정기 보수 교육	추후 공지	110	
특별 교육	추후 공지	220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는 개업 시 교육, 훈련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을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63-242-451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